



의안번호	제41호
------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1. 4. 1.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1호
----------	------

제출연월일 : 2021. 4. 1.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에 적합하도록 도시관리 계획,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 나. 특정 공작물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재공람 기준을 정비 (안 제8조)
- 나. 공동구의 관리비용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11조의2)
- 다.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27조의2)
- 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경관지구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을 따르도록 함(안 제34조)
- 마.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준용하여 기반 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 정비(안 제57조)
- 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폐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정비 (안 제60조, 안 제66조, 안 제71조)
- 사. 발전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명확화 등을 위한 정비(안 별표2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참고1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 2021. 2.19. ~ 2020. 3.15.
 - 나) 결과: 참고2 참조
- 5)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 6) 충청남도소관실과: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 공람기간내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시장은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논산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 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시장은 법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논산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법령검토 등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전단 중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 $(1+0.3a)/(1-a)$ ”를 “ $(1+0.5a)/(1-a)$ ”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업무담당국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를 “업무담당국장”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위원회 담당위원”을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위원회 업무담당”을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1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별표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

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례) 「별표24」 발전시설 제5호나목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된 것에 한한다. 조례 시행일부터 사용승인되는 건축물로 주거밀집지역 및 주요도로와의 이격거리에 저촉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거나, 개인 또는 법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도시정책과장	이 남 해
	도시계획팀장	이 현 근
	담 당 자	박 평 운 (746-621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 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 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 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용도지 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변경 등 내용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경우 와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 의 감소와 증가된 부분의 20퍼 센트 미만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 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p> <p><신 설></p> <p>1. 2. (생략)</p> <p><신 설></p>	<p>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 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 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p> <p>1. 주민 공람기간내 청취한 주 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 영하고자 하는 경우</p> <p>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 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 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p> <p>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 -----.</p> <p>제11조의2(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 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 한 사항은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p> <p>1. 2. (현행과 같음)</p> <p>제27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p>

현행	개정안
	<p>관협의회 운영) ① 시장은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논산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p> <p>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주무부서 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p> <p>③ 시장은 법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때에 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논산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p> <p>④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법령검토 등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p>

현행	개정안
<p>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u>위원회 운영(전체, 공동, 분과) 및 운영개선 관련 조사연구</u></p> <p>③ ~ ⑤ (생략)</p> <p>⑥ <u>기획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계획 분야와 정책연구 분야의 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같음)</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 신 · 구조문대비표(별표24)

현 행		개 정 안	
구분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구분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용어 정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인가(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9를 준용한다. 2. “주요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도 중에서 2차선 이상 도로를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의 지적경계선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3. 이 기준에 따르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정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4.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용어 정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발전 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은 주택 1호당 30m를 누적한 거리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u>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2. 주요도로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u>설치하는</u>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에 높이 1m 이상 울타리(휨스 또는 수목 등)를 설치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u>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위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발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u> 	발전 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호 이상의 ----- ----- ----- -----아 니할 것.<단서 삭제> 2. ~ 3. (현행과 같음) 4. <u>부지 위에 설치하는</u> ----- ----- ----- ----- 5. <u>발전시설의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예외규정</u> <u>가. 발전시설 설치시 (1)-(2)의 조건에</u> <u>해당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의</u> <u>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현 행		개 정 안	
구분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구분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u>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u>		(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u> (2) <u>개인 또는 법인이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u> 나. <u>허가목적대로 이용중인 기존 건축물 위에 발전사업용 발전시설을 설치시, (1)~(2)의 형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제1호 내지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1) <u>경사지붕 : 경사면에 부착형으로 설치하는 경우(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물에 한하여 허용)</u> (2) <u>평지붕 : 발전시설의 최고높이 2미터 이하, 벽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는 경우</u>
숙박 시설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숙박시설	1. ~ 2. (현행과 같음)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야적장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주요도로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야적장	1. ~ 4. (현행과 같음)
축사	1.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축사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구분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구분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2. 우량농지의 연쇄적 잠식 등 방지를 위하여 부지증설을 수반하는 축사의 증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인허가된 축사 부지내에서 퇴비사의 설치를 위한 증축은 허용한다.		
레미콘, 아스콘, 염색,도장, 표백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은 주택 1호당 50m를 누적한 거리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장	레미콘, 아스콘, 염색,도장, 표백
화장시설, 동물 화장시설	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입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화장 시설	화장시설, 동물 화장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감량화시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2.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폐기물 관련 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감량화시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1. ~ 3. (현행과 같음)

[별표 24]

구분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용어정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 밀집지역” 이란 10호 이상의 인가(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9를 준용한다. 2. “주요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도 중에서 2차선 이상 도로를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의 지적경계선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3. 이 기준에 따르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정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4.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발전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은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은 주택 1호당 30m를 누적한 거리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요도로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부지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에 높이 1m 이상 울타리(웬스 또는 수목 등)를 설치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예외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발전시설 설치시 (1)~(2)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개인 또는 법인이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나. 허가목적대로 이용중인 기존 건축물 위에 발전사업용 발전시설을 설치시, (1)~(2)의 형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제1호 내지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사지붕 : 경사면에 부착형으로 설치하는 경우(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물에 한하여 허용) (2) 평지붕 : 발전시설의 최고높이 2미터 이하, 벽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는 경우
숙박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야적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주요도로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구분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
축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2. 우량농지의 연쇄적 잠식 등 방지를 위하여 부지증설을 수반하는 축사의 증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인허가된 축사 부지내에서 퇴비사의 설치를 위한 증축은 허용한다.
공장	레미콘, 아스콘, 염색,도장, 표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은 주택 1호 당 50m를 누적한 거리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입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화장 시설	화장시설, 동물 화장시설	
폐기물 관련 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감량화시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 당 없 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해 당 없 음

나. 추계결과

○해 당 없 음

3. 작성자

도시정책과장 이 남 해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를 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의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인·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2) (현행과 같음)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8. 6.30. 시행)

□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점용료는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참고2

입법예고시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

제 목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계재제 호	고시공고번호	논산시 공고 제2021-339호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21-02-19	
첨부파일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도시정책과)-20210219.hwp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1조 및 ?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에 관한 조례 ?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자치법규시스템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목록

나. 관계부서 협의 : 제출된 의견없음

다. 전자공청회 : 제출된 의견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터마당 > 취업정보 > 정책참여 ▶ - 전자공청회 - 정책포럼 -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 > 적극행정 > 참여서비스 > SMS서비스 > 	<p>발제자 : 충청남도 논산시 토론기간 : [진행] 2021.02.19~2021.03.15</p> <p style="text-align: right;">★ 0 ♥ 0 💬 0</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7bff;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radius: 3px;">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안내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p> </div> <p>◎ 발제요약</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에 적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p> <p>나. 특정 공작물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p> <p>◎ 발제내용</p> <p>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재공람 기준을 정비 (안 제8조)</p> <p>나. 공동구의 관리비용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11조의2)</p> <p>다.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27조의2)</p> <p>라.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경관지구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을 따르도록 함(안 제34조)</p> <p>마.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준용하여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기준 정비(안 제57조)</p>
---	--

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제출된 의견없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법규검색 입법예고 최근제개정자치법규	주민참여조례서명하기	<input type="text"/> 🔍 ☰
<h3>입법예고</h3>			
공고(공포)명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충남	부서	행복도시국 도시정책과
공고(공포)번호	논산시 공고 제2021-339호	공고(공포)일자	2021년02월19일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41조 및 ?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자치법규시스템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도시정책과)-20210219.hwp		
목록			
국민의 의견 전체의견(0), 찬성(0), 반대(0), 기타(0)			
작성자	의견	찬성반대	작성시간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